

제 191 회 임시회  
의회운영위원회 (2013.04.25)

# 규칙안 검토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  
[전문위원 김성윤]

<의안번호 제2013 - 24호>

#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4. 10.
- 나. 제 출 자 : 강철우 · 조선제 · 이성복 의원
- 다. 회부일자 : 2013. 4. 11.

## 2. 제안이유

- 의회 의장단 선출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의장단 후보자의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, 보다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선거문화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의장,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후보자 등록 규정 신설 (안제8조 제5항)
-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의 정견발표 규정 신설(안제8조 제6항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의장단 선출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의장단 후보자의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, 보다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선거문화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
- 이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6. 참고자료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·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. <신설 2011.7.14>

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1.7.14>